

「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 서비스」이용 약관 변경전.후 대비표

2015.08.25 시행

2016.09.13 변경

2017.06.01 변경

2018.01.12 변경

2019.09.01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 정산 계약	해외지불대행사 제휴 (<u>크원화, 크외화</u>)정산계약	외화정산 추가
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7.“해외지불대행사”란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은행과 소정의 계약을 체결한 해외소재 회사로서 []에 주소를 둔 []를 의미합니다.</p> <p>8.“뱅크”란 []에 주소를 둔 []로서 이 계약의 거래를 위한 전자적 통신망을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.</p> <p>9. “영업일”이란 은행의 영업일을 의미합니다.</p> <p>10. 신설</p> <p>11. 신설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7.“해외지불대행사”란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<u>은행 혹은 뱅사(PG사)와</u> 소정의 계약을 체결한 해외소재 회사로서 [<input type="checkbox"/>Alipay, <input type="checkbox"/>Wechatpay, <input type="checkbox"/>기타 ()]를 의미합니다.</p> <p>8.“뱅크(PG사)”란 국내에 주소를 둔 [<input type="checkbox"/> KICC, <input type="checkbox"/> KSNET, <input type="checkbox"/> ICB, <input type="checkbox"/>기타()]로서 이 계약의 거래를 위한 전자적 통신망을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.</p> <p>9. “영업일”이란 <u>대통령령에 의한</u> 관공서의 공휴일, 토요일,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은행의 영업일을 의미합니다.</p> <p>10.“승인통화”란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해외지불대행사가 은행 또는 뱅사(PG사)에게 송금하는 자금의 기준 통화를 의미합니다.</p> <p>11.“정산통화”란 동 매출채권 매입거래를 통해 은행이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정산금액의 기준 통화를 의미합니다.</p>	<p>해외지불대행사 추가 및 해외지불대행사와 뱅사(PG 사)기재 방법 변경</p> <p>문구 수정 및 추가</p>
<p>제3조(매출채권 매입신청 방법)</p> <p>판매자는 뱅사가 제공하는(중략)</p> <p>6. 외화표시 매출채권매입 신청금액</p>	<p>제3조(매출채권 매입신청 방법)</p> <p>판매자는 뱅사(PG사)가 제공하는(중략)</p> <p>6. <u>승인통화표시</u> 매출채권매입 신청금액</p>	문구 추가 및 변경
<p>제4조(환율 적용)</p> <p>①신설</p> <p>①~ ③</p>	<p>제4조(환율 적용)</p> <p>①동 조에 적용되는 환율은 판매자가 입금 받을 정산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, 승인통화와 정산통화가 일치할 경우 본 조2항내지 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 <p>②~ ④</p>	문구 추가 및 문구추가에 따른 ①~③항의 ②~④항으로의 변경
<p>제5조(매출채권 매입 및 매입거절 방법)</p> <p>①~ 은행은 동 매출채권을 위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매입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~ 은행은 신청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 제2항 2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.</p>	<p>제5조(매출채권 매입 및 매입거절 방법)</p> <p>①~ 은행은 동 매출채권을 위 제4조 <u>제3항</u>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매입하기로 합니다. 단, 승인통화와 정산통화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매입합니다.</p> <p>②~ 은행은 신청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 <u>제3항 2호</u>의 환율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. 단, 승인통화와 정산통화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처리할</p>	제 4 조 문구추가에 따른 변경 및 문구추가

	니다.	
제6조(환불대금 송금신청 방법) 6.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	제6조(환불대금 송금신청 방법) 6.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	문구 변경
제7조(환불대금 송금 및 송금거절 방법) ③은행은 판매자로부터 송금신청이 접수된 직후부터 동 영업일의 자정 사이에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(중략) ④판매자의 계좌가 타행계좌이거나, 판매자의 계좌 잔액이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은행은 뱅사의 계좌에서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뱅사에게 판매자 앞 동 출금액만큼의 대지급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판매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. ⑤3. KRW표시 환불대금 송금액	제7조(환불대금 송금 및 송금거절 방법) ③은행은 판매자로부터 송금신청이 접수된 직후부터 동 영업일의 자정 사이에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(중략) ④판매자의 계좌가 타행계좌이거나, 판매자의 계좌 잔액이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은행은 뱅사(PG사)의 계좌에서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뱅사(PG사)에게 판매자 앞 동 출금액만큼의 대지급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판매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. ⑤3.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 송금액	문구 변경 및 추가
제9조(유효 기간)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해외지불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, 은행이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하면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. ③신설	제9조(유효 기간)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해외지불대행사 또는 뱅사(PG사)와 해외지불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, 은행이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계약 종료일자 2주전까지 사전 통지하면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. ③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외지불대행사의 일방적인 거래중단 등으로 판매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행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,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.	문구 추가